



# 가공식품포장 표시 배경

## Background of Labeling of Processed Food Packaging

주井純一 / 삼영상사(주) 품질보증부장

### 1. 서론

다양한 식품을 널리 보편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개개의 원료를 조합, 고유의 식품가공기술과 품질보지기법 및 적절한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일정한도의 기간 보존에 적합한 「가공식품」으로 모양을 변화시켜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

또 「가공식품」이 현대사회에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식품 그 자체의 본래기능(맛있음, 위생적, 편리함)을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사회·환경을 배려하는 것」 등 소비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고, 상품 선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상품에 관련된 정보야말로 상품의 발신자와 많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정보는 정확한 동시에 적절한 것이 요구된다.

독선적이고 잘못된 정보는 일단 발신되어 버리면 사회에 보편적으로 넓혀지기 때문에 정보의 발신자는 발신하는 정보내용을 상당히 음미할 필

요가 있고, 보낸 정보에 대한 책임도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 브랜드소구 및 차별성을 요구하는 디자인, 로고마크 등의 범주

② 상품의 내용을 전하는 「표시」라고 말해지는 범주

③ 상품의 취급 및 핸들링에 관한 화물 취급, 바코드, 케어마크 등의 범주

④ 상품에 사용한 포장 재료를 표시하는 재질 표시등의 범주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정보로써 상품의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라고 불리는 범주에 한정하여 개략을 서술하고 싶다.

### 1. 식품표시 에

「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편의점, 대형판매점 또는 일반 전문점에서 매입한 여러 가지 식품을 보고 알듯이 어느 일정한 하게 닳은 표시용식이 있는 것을 눈치 챘다고 생



〈별기양식에 필요한 기재항목〉

명칭	- 제품 그대로의 일반명칭, 「품명」 「종류별」 「종류별명칭」으로도 가능
원재료명	- 사용한 원재료와 첨가물의 명칭(원재료명, 첨가물의 순서로 표시함, 또는 각각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함)
원료원산지명	-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명, 원산국명(품목은 지정)
내용량	- 내용량의 질량, 체적 또는 개수
고형량	- 내용물 안에 고형 되어 처리가 되어있는 질량(품목은 지정)
내용총량	- 내용물의 총질량(품목은 지정)
유통기한	- 미개봉 상태로 품질보증이 충분한 기간(소비기간으로 해야 만하는 경우도 있음)
보존방법	- 미개봉 상태로의 보존방법
원산국명	- 내용물이 제조 또는 가공되어진 국명(일본국의 경우는 불요)
제조사	- 내용물을 제조한 장소, 이름(법인, 개인), 제조소고유기호를 만들어 바꾸는 것도 가능(판매자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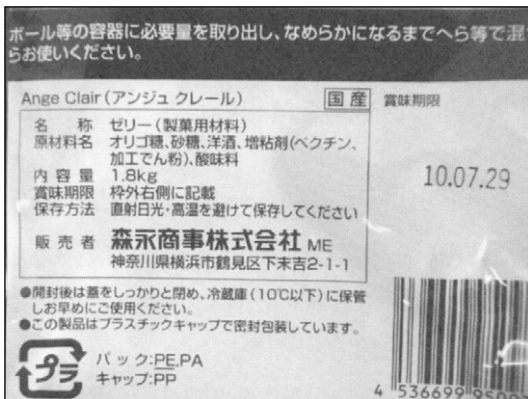
- ① 일괄표시사항의 표시에 사용된 문자 및 테두리 색은 배경 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한다.
- ② 표시에 사용된 문자는, 일본공업규격Z 8305(1962)에 규정된 8 포인트의 활자이상의 크기의 통일을 얻은 활자로 한다. 단 표면면적이 대략 150cm 이하의 것에서는 5.5~7.5포인트로 할 것
- ③ 표시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일괄표시의 양식 중에서 그 항목을 생략가능하다.
- ④ 이 양식은 세로쓰기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품질에 관련된 표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의무표시사항, 부당경품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공정경쟁규약으로 정해진 표시사항, 그 외의 법령에 의한 표시해야만 하는 사항 및 일반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표시사항은 테두리 내에 기재가능하다.

각한다.

이들테면 이것이 「가공식품」 특유의 「일괄표시 양식」, 「별기양식」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에는 상품의 뒷면 등에 테두리로 감싸져 명칭, 원료재명, 내용량, 유통기한, 보존방법, 제 조자 등이 표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진 1] 별기양식의 예



2. 식품표시 배경

지금까지 서술해 온 상품의 「표시」라고 불리는 「별기양식」에도 사실은 개개의 정보발신자가 따로따로 표현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일정한 표현방법이 있다. 이 나라가 정한 약정은 법률에서 규제되고 있다. 법률로 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그러므로 정보 발신자는 그 법률을 상당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표 1] 특정개별의 품질표시기준품목

식용식물유지	드레싱 및 드레싱타입 조미료	칠드미트볼	조리냉동식품
즉석면류	소세지	칠드만두 류	과실통조림 및 과실 병조림
베이컨류	혼합 소세지	건표고버섯	레토르트파우치식품
냉동두부	얇게썬 가다랑어포	마가린 류	조리식품통조림 및 조리식품병조림
마카로니류	어육햄 및 어육소세지	당근주스 및 당근믹스주스	탄산음료
우스터소스류	칠드햄버그스테이크	농산물통조림 및 농산물병조림	과실음료
프레스햄	건조미역	농산물지물	소프트닝
혼합프레스햄	염장미역	잼 류	현미 및 정미
된장	식초	건조면 류	수산물
특수포장어묵류	토마토가공품	빵 류	표고버섯
성게가공품	간장	축산물통조림 및 축산물병조림	
퐁미조미료	햄 류	짜서 말린 어류	
성게무침	두유 류	퐁미 어묵	
건조수프	면류 등 용 쓰유	생 타입 즉석면	
건조매쉬드포테이토	체리설탕절임	손으로 뽑은 소면	
과당	퐁미 어묵	정제라드	

최근에는 이 상품들의 표시에 관한 상담창구는 성청의 관계단체, 지방자치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무엇인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가공식품」에 관한 표시는 나라가 정한 어떤 법률에 규제되고 있는 것일까?

크게 나누면 다음의 법률에 규제되고 있다.

이것들의 법률을 어렵잡아 말하면,

- 「식품위생법」- 후생노동대신이 지정, 음식의 위생상의 위해발생 방지와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건강증진법」- 후생노동대신이 지정,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법률」(JAS법), 이하 생략하여 JAS법 - 농림수산대신이 지정, 일반소비자의 상품선택에 도움

이 되게 하기 위하여 품질표시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허위, 과대표시 등의 부당표시를 규제하는 등이 있다.

그 외 「가공식품」에 관한 법률로써는,

- 상품의 적정한 계량을 유지하기 위한 「계량법」

- 미승인 의약품의 효과, 효능표시를 규제한 「약사법」

- 사업자 간의 부정한 경쟁을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또 상품의 내용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포장, 의장 등에 관련된 법률, 조령으로써,

- 적정포장(포장된 상품의 용적 등)에 관련된 「동경도 생활조례」 등

- 사용한 용기포장의 적절한 폐기와 자원유효



[표 2] 식품일반 및 주류

[식품일반]

음용유	초콜렛 이용식품
요구르트·유산균음료	추잉껌
살균유산균음료	냉동 두부
치즈	식초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과실음료 등
꿀 류	커피음료 등
로얄젤리	합성레몬
성게 식품	두부 류
거자명란젓식품	마가린 류
가다랑어포	관광토산품
식품 김	레귤러커피 등
식품 통조림	햄?소세지 류
토마토가공품	식육
기루와사비	포장 식빵
생면 류	즉석면 류 등
비스킷 류	된장
초콜렛 류	드레싱 류
간장	거르지않은 초
식염	

[주류]

맥주	단식증류 소주
수입맥주	아와모리(◊)오키나와 특산소주)
위스키	주류소매업
수입위스키	

이용을 위한 재질표시를 표시한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

· 상품의 의장, 궁리 등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의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등이 「가공식품」의 표시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이 상품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한 여러 가지 약속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앞서 서술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은 「별기양식」을 규제하고 구체적인 「가공식품」의 품질표시의 방법을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 JAS법에서는 일반적인 식품에 관한 표시에 관련된 약속마다의 것 외에 「가공식품」의 품질인 징제도로써 특정개별의 「가공식품」에 한정된 식품(표 1)의 품질표시의 기준이 표시되고 있다.

이 특정개별의 품질표시기준에서는 자세하게 식품의 정의, 표시방법이 정해져 있다.

또 「가공식품」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상품의 적절한 선택을 유지하는 제도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경품 및 표시에 관련된 물을 자주적으로 정한 「공정경쟁규약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제품정의, 표시방법, 그림표시의 규정 등 제품별로 자세하게 정해져 있다.

또 공정경쟁규약에 합치한 제품에는 지정의 마크가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이 정해져 있는 품목은 (표 2)대로이다.

### 3. 식품표시와 우리들

과거 몇 개인가의 「가공식품」에 관련된 과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은 「식」이라는 것은, 또 「식의 안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와 많은 것이 문의 되어 왔다.

그리고 「식」에 관련된 정보제공이 사회의 큰 물결로써 넓혀져 왔다.

그때마다 미국, 유럽의 선례와 경험이 쌓여져 「식」에 관련된 정보, 규제가 넓혀져 온 것은 수많

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은 「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식품, 식재」의 트레서빌리티에 관련된 의론이 많이 발신되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존재 그 자체를 알고 싶다고 말하며, 알권리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품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곳은 한층 더 「식품, 식재」의 트레서빌리티가 중요하다.

현재 이 트레서빌리티제도의 구축을 향해서는 각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자 간에 그 정보교환이 왕성히 행해지도록 되었다.

지금까지 서술해 온 「가공식품」의 표시에 관련된 나라의 법률, 규제는 다양한 개정, 추가되어오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금부터도 변화해 나갈 것이다.

또 종래부터의 표시에 관련된 법률, 규제가 다수의 관계성청에 걸쳐져 폭주한 법률, 규칙의 기초로 규제 및 행정이 행해져 중복되는 사항, 성칭마다의 해석의 차이를 해소하기위하여 소비자행정의 일원화가 꾸며지고 있는 오늘날이다.

지금부터 더욱더 「가공식품」의 과거의 규제에 관한 새로운 재검토가 계획될 것이다. 그것에 의해 법률, 규제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공정한 거래」,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한발 앞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전체에서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잇는 단 하나로 두꺼운 파이프인 「상품」의 표시, 구체적으로는 「가공식품」의 표시의 규제에는 또 더욱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가공식품」의 표시에 대하여 묵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평소 본지를 보고 계시는 식품의 포장재료, 포장시스템, 수송자포장에 관계된 많은 분들은 평소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가공식품」의 표시가 눈에 띄는 일이 많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서술해온 표시방법에는 과거의 식품사업자가 경험한 많은 지식과 문제해결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부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공식품」의 상품을 손에 넣을 때에 지금까지 서술해 온 것을 염두하고 「가공식품」의 표시를 생각해 보아 주신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 독 자 쥬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쥬령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